
畜産法 施行規則中 改定令

농수산부 제 576 호

<편집부 제공>

농수산부는 지난 8월 9일 축산법시행 규칙중 개정안을 공포하고 공포한 날부터 실행하기로 했다. 이 시행령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부화업자는 이 령이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 이 령이 규정에 의한 부화장 시설 기준을 보완하고 도지사에게 재 등록 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 중 새로 보완된 점은 종계도 등록을 필해서 종계확인 인을 받고 종계확인서를 교부 받은후 그 사실을 종 계기록부에 기재 하고 종계확인을 한 종계는 심사 기관으로 하여금 농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종계표시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축산법 시행 규칙 개정령중 부화업자나 종계업자가 필요한 사항을 발췌계제 하니 참고 하기 바란다. ...<편집자 註>

축산법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3항 내지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④제 3항의 유효기간은 신청에 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⑤도지사가 제 1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의 2호서식에 의한 등록필증을 교부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종란의 선택) 부화업자가 부화용으로 사용하는 종란은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확인을 얻은 종계에서 생산된 난으로서 제26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종계 확인번호가 표시된 것이어야 한다.

제26조의 2 내지 제26조의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 2(종계확인) ①종계를 사육하는 자(이하

“종계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1의 3호 서식에 의하여 관할 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종계확인을 얻어야 한다.

②도지사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계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농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종계에 관한 권위있는 기관(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종계여부에 관한 심사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26조의 3(종계심사기준) 종계의 심사는 이를 용도별 세대별 계종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기준은 농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의 4(수수료) 제26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관은 신청인에 대하여 도지사가 농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시 고시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6조의 5(종계확인서통) 도지사는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종계확인을 할 때에는 별지 제11의 4호 서식에 의한 종계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제11의 5호 서식에 의한 종계기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의 6(종계표시) 도지사는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종계확인을 한 종계에 대하여 심사기관으로 하여금 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종계표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의 7(종계확인의 취소)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종계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계확인을 얻었을 때.
2. 종계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 또는 전염성 질병에 감염되었을 때
3. 기타 종계에 관한 도지사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